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 계약

201 년 월 일

판매자: (인)
대표이사

은행: (주)하나은행 지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라 함)과 []에
주소를 둔 [](이하 "판매자"라 함)는 판매자가 해외지불대행사의 회원
(이하 "구매자"라 함)에게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조
건으로 매입하고, 판매자의 해외지불대행사앞 환불대금 송금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간 신의성실로써 아래와 같이 절차 등을 정하기로 합니다.

제1조(계약의 적용)

이 계약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한 **매출채권을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할 것을 은행에 신청하고, 판매자가 해외지불대행사에게 환불할 금액을 은행에게 송금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외환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판매대금"이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서 받는 상품 대금을 의미합니다.
- "결제수수료"란 해외지불대행사가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불대행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매출채권금액"이란 판매대금에서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매출채권매입 신청금액"이란 판매자가 은행에 무소구조건으로 매입 신청하는 '매출채권금액'을 의미합니다.
- "매출채권식별번호"란 해외지불대행사가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식별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통지한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6. "무소구조건"이란 매출채권을 매입한 이후에는 '매출채권에 대한 지불채무자(구매자 또는 해외지불대행사)가 '매출채권을 매입한 자(은행)'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매출채권을 매입한 자(은행)'가 '매출채권을 매도한 자(판매자)'에게 매출채권 매입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7. "해외지불대행사"란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은행과 소정의 계약을 체결한 해외소재 회사로서[]에 주소를 둔 []을 의미합니다.
8. "밴사"란 []에 주소를 둔 []로서 이 계약의 거래를 위한 전자적 통신망을 제공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9. "영업일"이란 은행의 영업일을 의미합니다.

제3조(매출채권 매입신청 방법)

판매자는 밴사가 제공하는 전자적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매입신청을 합니다.

1. 은행이 지정하는 무소구조건 매출채권매입 신청코드
2.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판매자식별번호
3. 은행이 지정한 해외지불대행사식별코드
4. 해외지불대행사로부터 통지 받은 매출채권식별번호
5. 상기 매출채권식별번호를 통지 받은 일자 및 시간
6. 외화표시 매출채권매입 신청금액

제4조(환율 적용)

- ① 은행은 매출채권의 매입 시 적용할 환율을 판매자가 판매시점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D)의 오전 10시까지 '익영업일매입환율'과 '익익영업일매입환율'을 전자적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합니다.
- ② 은행은 아래와 같이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채권을 매입합니다.
 1. '영업일(D) 11시부터 익영업일 0시 직전까지 발생한 매출채권: 영업일(D)에 제공된 '익영업일매입환율'로 익영업일(D+1)에 매입
 2. 익영업일(D+1) 0시부터 11시 직전까지 발생한 매출채권: 영업일(D)에 제공된 '익익영업일 매입환율'로 익익영업일(D+2)에 매입
- ③ 위 2항에서 매출채권이 발생한 시점은 제3조 제5호의 '매출채권 식별번호를 통지받

은 일자 및 시간으로 합니다.

제5조(매출채권의 매입 및 매입거절 방법)

- ① 판매자는 전영업일에 판매한 매출채권을 전영업일의 0시부터 11시 직전까지 판매한 매출채권과 전영업일 11시부터 영업일 0시 직전까지 판매한 매출채권으로 구분하여 매영업일 9시 30분까지 은행에 매입신청하며, 은행은 동 매출채권을 위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매입하기로 합니다.
- ② 어떠한 사유로든 제1항과 같이 매출채권의 매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판매자는 가능한 시점에 매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신청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제4조 제2항 2호의 환율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 ③ **은행은 매입신청이 접수된 영업일의 자정까지 매출채권 매입대금을 판매자 명의의 계좌(은행)에 입금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가 하나은행 계좌가 아닌 경우, 입금일 현재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인터넷뱅킹 방식 타행송금수수료를 공제하고 **매입신청이 접수된 영업일의 자정까지 입금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매입신청한 매출채권 중 해외지불대행사로부터 결제확인'을 통지 받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은행은 매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은행은 매입거절한 매출채권 명세를 판매자에 통지합니다.
- ④ 해외지불대행사가 매입거절 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은행에 다시 결제확인을 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제2항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제6조(환불대금 송금신청 방법)

판매물품의 반품 등을 사유로 판매자가 해외지불대행사의 회원에게 매출채권 금액을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는 전자적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은행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환불대금에 대한 송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환불대금송금 신청코드
2.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판매자식별번호
3. 은행이 지정한 해외지불대행사식별코드
4. 해외지불대행사로부터 통지 받은 환불채무식별번호
5. 상기 환불채무식별번호를 통지 받은 일자 및 시간
6. KRW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

제7조(환불대금 송금 및 송금거절 방법)

- ① 판매자는 전영업일의 0시부터 11시 직전까지 해외지불대행사에게 통지한 환불대금과 전영업일 11시부터 신청일의 0시 직전까지 통지한 환불대금을 구분하여 매영업일의 9시 30분까지 은행에 송금신청 합니다.
- ②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제1항에서 정한 송금신청 시간까지 송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익영업일 9시 30분까지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제1항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③ 은행은 판매자로부터 송금신청이 접수된 직후부터 동 영업일의 자정 사이에 KRW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을 제5조 제3항에 기재된 판매자 명의의 계좌에서 별도의 출금전표 없이 출금하여 송금합니다.
- ④ 판매자의 계좌가 타행계좌이거나, 판매자의 계좌 잔액이 KRW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은행은 밴사의 계좌에서 KRW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밴사에게 판매자 앞 동 출금액만큼의 대지급금청구권이 발생하며 판매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⑤ 은행이 환불대금의 송금처리를 완료한 경우 즉시 판매자에게 전자적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환불대금 송금완료를 통지합니다.
 1. 환불대금 송금신청 접수코드
 2. 해당 환불대금에 해당하는 환불채무식별번호
 3. KRW표시 환불대금 송금액
- ⑥ 은행은 제 3항의 판매자 명의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고 제4항에 따라 밴사의 계좌에서 송금신청금액을 출금하지도 못한 경우에는 환불대금을 송금하지 않으며, 제 5 항의 업무처리 완료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제8조(매출채권 매입신청시 준수사항)

판매자는 은행에 매입 요청한 매출채권을 은행 이외의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유효기간)

-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 까지 별도의 서면통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과 해외지불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은행이 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하면 본 계약도 해당 종료

일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의 처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판매자와 은행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